

#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5월 2일 부천시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5월 2일
-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5. 13) 상정
  - 제10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2003. 5. 13)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정진환)

### 가. 제안이유

- 우리시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사건중에서 판결결과에 따라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는 소송사건을 분류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 변호사선임 및 소송비용지급기준등의 특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중요소송을 선별하여 별도관리 및 수임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4조제4항 및 제 5항)
-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등을 심의하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불합리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변경 조정함  
(안 별표 1)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input type="radio"/> 심의위원회 구성 이유는 무엇인가?	<input type="radio"/> 소송사례 발생시 변호사의 선임범위 등을 정하고자 구성 운영하고 있음.
<input type="radio"/> 고문변호사 지급액은?	<input type="radio"/> 최대 1,100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음.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2호
의결연월일	2003.5.15 (제104회)

제출년월일 : 2003. 5. 2

제출자 : 부천시장

## □ 제안이유

- 우리시와 관련하여 진행중인 소송사건중에서 판결결과에 따라 시의 행·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되는 소송사건을 분류하여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 변호사선임 및 소송비용지급기준등의 특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중요소송을 선별하여 별도 관리 및 수임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등을 심의하는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5조)
- 불합리한 소송비용지급기준을 변경 조정함 (안 별표 1)

부천시조례 제 호

##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고문변호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소송비용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

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 규정에 의한 비용중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시장이 중요소  
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  
적인 노력정도,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할 수 있다.

1.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  
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
2. 시가 10억원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
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

4. 기타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

⑤시장은 제4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5조를 제6조로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①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당해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
4. 당해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

5. 기타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별표 1의 소송비용지급기준중 민사소송의 본안소송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소송별	지급기준			소송비용 청구시 구비서류
	내 용	착수금	승소사례금	
민 사 소 송	2. 본안사건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없는 경우	○ 650,000 원 이내	○ 완전승소시는 착수금의 150/100 ○ 60% 이상 승소할(화해 및 조정 사건 포함)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청구서, 소 가증명원, 사건 확정 증명원, 소 취 하서 중 해당서류
	○소송물가액을 산정 할 수 있는 경우 (소송물가액 기준)	○별표 2 참조	○인락, 소취하(쌍방취하포함)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50/100 (다만, 변론이 3회미만 속행된 경우와 조건부취하의 경우에는 제외)	

###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고문변호사 이외의 일반변호사에게 위임하는 사건에도 적용한다.
- ③(다른조례 개정)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21호를 제22호로 하고,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중요소송 지정 및 대책 등에 관한 사항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각 심급단위 별로 지급한다.</p> <p>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중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p>	<p>제4조 (소송비용 등) ①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 1과 별표 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심급단위별로 지급한다.</p> <p>②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월 20만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③제1항 규정에 의한 비용중 착수금 및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p> <p>④제1항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의 구체적인 노력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등을 참작하여 소송비용을 달리 지급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환경기초시설과 납골당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li> <li>2. 시가 10억원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li> <li>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소송</li> <li>4. 기타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li> </ol>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⑤ <u>시장은 제4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u></p> <p><u>제5조 (소송심의위원회) ①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며,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u></p> <p><u>② 위원회는 당해 소송이 시정에 미치는 영향과 패소의 위험 및 상대방의 소송에 대한 노력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u>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u></li><li><u>2. 중요소송의 지정에 관한 사항</u></li><li><u>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u></li><li><u>4. 당해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의 선정에 관한 사항(일반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포함)</u></li><li><u>5. 기타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li></ol>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5조</u> (사건실적부 비치) (생략)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20. (생략) <u>〈신 설〉</u>  <u>21.</u> (생략)	<u>제6조</u> (사건실적부 비치) (현행과 같음)  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결정사항) ----- -----. 1.~20. (현행과 같음) <u>21. 중요소송 지정 및 대책 등에 관한 사항</u>  <u>22.</u> (종전의 제21호와 같음)